

#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1년 2월 10일 서울특별시교육감

나. 회부일자: 2011년 2월 15일

다. 상정일자: 2011년 2월 23일 , 수정가결

제229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 2. 제안 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정책기획담당관 이은각)

###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에 따라 서울교육 주요정책의 입안,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있어서 각계 전문가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감의 자문에 응하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나.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하에 22개 정책분야에 대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 정책자문위원회에서 각 정책분야에 관한 기본방향 및 계획 수립, 점검 및 평가, 교육제도 개선 등에 관하여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도록 위원회 기능을 정함(안 제3조)
-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주요 교육정책 및 발전 방향 수립」 관련 위원회는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안 제4조)
-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안 제6조)
-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 3. 전문위원 검토 요지(수석전문위원 이성용)

#### 가. 총괄 의견

- 동 조례안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자문위원회에 22개의 위원회를 설치하여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주요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정책 결정 과정에 민의를 반영한다는 취지는 긍정적이라 평가할 수 있을 것임.
- 다만, 동 조례안의 제정 목적이 주요 정책에 대하여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더 좋은 정책을 결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22개의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정책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나. 세부 내용

##### 1) 22개 위원회의 설치에 대하여(안 제2조)

-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것임.
- 다만,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제2항에서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표1]에서 보는 것과 같이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있는지 살펴 볼 필요가 있을 것임.

[표1]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 위원회 운영 현황

2010.10.26. 현재

연번	위원회명	근거
1	감사자문위원회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3항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2	개척심의위원회	교과부지침 서울특별시교육청학교건축물등개척심의위원회구성운영규정
3	계약심의위원회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32조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6조 내지 109조 서울특별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4	고등학교 입학전형 사교육영향평가위원회	서울특별시고등학교 입학전형 사교육 영향평가 운영 규칙 제5조
5	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9조 서울특별시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규칙 제2조
6	고등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4조7항 서울특별시고등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규칙 제2조
7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서울특별시교육감소속공무원공무국외여행규정 제6조
8	공유재산심의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제4조
9	공적심사위원회	서울특별시교육·학예에관한표창조례 제11조 서울특별시교육·학예에관한표창조례시행규칙 제3조
10	공직자윤리위원회	공직자윤리법 제9조 서울특별시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11	교원능력개발평가관리위원회	서울특별시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8조
12	교원양성위원회	교원자격검정령 제17조의 2
13	교육공무원근무성적평정조정위원회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23조
14	교육공무원근무성적평정확인위원회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22조
15	교육공무원보통고충심사위원회	교육공무원법 제49조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3조의 4
16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제27조
17	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	교육공무원법 제50조 교육공무원징계령 제2조-4조
18	교육규제완화위원회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규제완화위원회규정 제5조
19	기록물평가심의회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 관한법률시행령 제54조
20	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	대안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21	민원조정위원회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22	법제심의위원회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서울특별시교육학예에관한법제사무처리규칙
23	보상금지급심의위원회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24	보안심사위원회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제4조
25	북한이탈주민학력심의위원회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8조의 2
26	서울교육격차해소위원회	서울특별시좋은학교만들기지원학교지정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9조
27	서울교육발전협의회	서울 교육발전협의회운영규정 제3조
28	서울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지방재정법 제33조 서울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29	교명제정심의위원회	서울특별시립학교명제정에관한규정 제3조
30	설계자문위원회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의2 서울특별시교육청 설계자문위원회 구성,운영규정
31	성과관리위원회	서울특별시교육청 성과관리위원회 규정
32	소송심의회	서울특별시교육학예에 관한 소송사무처리규칙 제18조의2
33	소청심사위원회	지방공무원법 제13조
34	안전관리위원회	서울특별시립학교시설물 안전관리에관한조례 제6조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시설물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규칙
35	영재교육진흥위원회	영재 교육진흥법 제4조의 3, 4
36	예산성과급심사위원회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4조 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성과급 운영 규칙 제4조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성과급운영규칙 제2조
37	우등상수여 및 후원명칭 사용 승인 심사위원회	각종 행사관련 서울특별시교육감 우등상수여 및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제4조
38	유아교육위원회	유아교육법 제5조 유아교육법시행령 제6조
39	인정도서심의회	교과용도서에 관한규정 제40조 서울특별시교육청인정도서심의회규칙 제3조
40	자율학교등지정운영위원회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05조의4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율학교등 지정,운영에 관한 규칙
41	장애인교원채용심의위원회	서울특별시교육청장애인교원채용심의위원회규칙
42	정보공개심의회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2조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1조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정보공개 조례
43	정비구역학습 환경보호위원회	학교보건법 제6조의 3 학교보건법시행령 제13조-15조
44	제안심사위원회	지방공무원법 78조 서울특별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제안규칙 제13조
45	지방공무원인사위원회	지방공무원법 제7조
46	질향교원심의위원회	교과부 지침 서울특별시교육청질향교원심의위원회규칙
47	투자심사위원회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4 서울특별시교육청 투자심사위원회운영규칙
48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제10조 서울특별시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
49	평생학습관운영위원회	서울특별시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50	학교건설위원회	서울특별시 학교건설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51	학교급식위원회	학교급식법 제5조 학교급식법시행령 제5조, 6조
52	학교도서관발전위원회	학교도서관진흥법 제9조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제4조
53	학교보건위원회	학교보건법 제17조 학교보건법시행령 제24조, 25조
54	학생징계조정위원회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 3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의 4
55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	행정서비스헌장규정 12조 서울특별시교육청행정서비스헌장규정 제12조
56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법 제6조, 제7조

- [표1]에서 보는 것처럼 35번 영재교육진흥위원회와 51번 학교급식위원회는 관련법에 의거해서 설치되었는데, 안 제2조제16호 영재교육위원회, 제1항제11호 친환경무상급식 위원회를 따로 설치하면 위원회 기능이 중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표 51번과 표 35번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뿐만 아니라 안 제2조제9호 문화 및 예술 교육과 제10호 체육 및 수련 교육은 교육감이 추진하고 있는 문예체육교육과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위원회를 따로 운영하기 보다는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2) 구성 및 회의진행에 대하여(안 제4조, 제5조)

- 각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교육감이 지명하는 위원으로 하여금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조직을 간소화하여 업무진행의 효율성을 추구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임.
- 다만, 위원장과 위원장의 직무대행자를 교육감이 지명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위원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감이 위원회를 통제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음.
- 따라서 위원장을 보좌할 부위원장도 선임하여 위원회를 조직화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해야 할 것이며,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도 위원을 추천하게 하여 위원이 다양한 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3) 회의의 진행에 대하여(안 제6조)

- 안 제6조제1항에서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도록 하고 있는데 위원회를 설치하고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아 유명무실해지는 경우를 경계한 규정이라고도 할 수도 있으나, 위 규정으로 인하여 위원회를 형식적으로 개최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1년 동안 한 번도 개최되지 않은 자문위원회의 경우 폐지 할 수 있도록 횟수의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4) 위원회 임기 및 위원회 결격사유에 대하여(안 제7조, 신설)

- 안 제6조에 의하면 위촉 위원회 임기를 1년으로 정하고 있는데,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원의 임기를 1년으로 정한 동 조항은 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나, 정책의 일관성, 업무의 전문성 및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임기를 2년으로 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뿐만 아니라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위원의 결격사유 등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하는 사람과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자는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위원의 책임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5) 운영세칙에 대하여(안 제13조)

-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법령이나 조례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바,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하는 것으로 할 것이 아니라 시행규칙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4. 심사결과

가.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나. 교육위원회 수정동의안 발의

- 1) 일 시 : 2011.2.23.(수), 제2차 교육위원회
- 2) 발의자 : 최보선 의원
- 3) 수정내용 : 별첨
- 4) 심사결과 : 수정 가결

서울특별시교육청정책자문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안

의안번호	234
------	-----

2011년 2월 23일  
교육위원회

1. 수정이유

- 가. 동 조례안은 22개 정책 분야에 자문위원회 설치근거를 마련하면서 위원회의 명칭을 교육감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원회의 명칭은 조례로 규정할 사항이므로 명칭을 정하기 위하여 수정하고자 함.
- 나. 그 밖에 입법이 미비한 조문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하에 설치할 수 있는 자문위원회의 명칭을 정함.(안 제2조제1항)
- 나. 위원회의 위원을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이 추천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4제2항)
- 다. 위원회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9조)
- 라. 위원회 해촉 규정을 신설함.(안 제7조)

3. 참고사항 : 없음

## 서울특별시교육청정책자문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안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조 중 “각계 전문가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감의 자문에 응하는”을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로 한다.

안 제2조제1항 중 “분야에 대한”을 삭제한다.

안 제2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호를 “교육복지정책자문위원회”로, 제2호를 “사교육정책자문위원회”로, 제3호를 “학교신설·이전자문위원회”로, 제4호를 “교육시설정책자문위원회”로, 제5호를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로, 제6호를 “학습부진대책자문위원회”로, 제7호를 “학생생활지도정책자문위원회”로, 제8호를 “외국어교육정책자문위원회”로, 제9호를 “문화·예술교육자문위원회”로, 제10호를 “체육·수련교육자문위원회”로, 제11호를 “친환경무상급식자문위원회”로, 제12호를 “학부모지원정책자문위원회”로, 제13호를 “혁신학교정책자문위원회”로, 제14호를 “수업·평가·연수혁신자문위원회”로, 제15호를 “과학교육자문위원회”로, 제16호를 “영재교육자문위원회”로, 제17호를 “환경·생태교육자문위원회”로, 제18호를 “진로·직업교육자문위원회”로, 제19호를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로, 제20호를 “도서관정책자문위원회”로, 제21호를 “학교비정규직정책자문위원회”로, 제22호를 “사학정책자문위원회”로 한다.

안 제2조제2항 중 “분야에 대한”을 삭제하고, “이 경우 위원회의 명칭은 별표와 같다.”를 추가한다.

안 제2조제3항을 삭제한다.

안 제3조 중 “위원회는 제2조에서 설치된 분야에 대한”을 “제2조에서 설치된 위원회는”으로 하고, “교육감의 자문에 응한다.”를 “교육감에게 자문한다.”로 한다.

안 제4조제1항 중 “위원장 1명을 포함한”을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로 한다.

안 제4조제2항 중 “위촉 또는 임명한다.”를 “위촉한다.”로 하고,

안 제4조제2항제1호를 “학계 또는 교육계 관계자”로, 제2호를 “교육 관련 단체 및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로, 제3호를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이 추천한 교육위원”로 한다.

안 제5조 중 제목 “위원장”을 “위원장 및 부위원장”으로 하고,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며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를 신설한다.

안 제5조제1항 중 “①”을 “②”으로, 제2항 중 “② 위원장은 교육감이 지명하며,”를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로 하고, “교육감이 지명하는 위원이”를 삭제한다.

안 제6조 중 “제6조”를 “제8조”로 한다.

안 제6조제2항제1호 중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를 “요구가 있는 경우”로, 제2호 중 “위원의”를 “재적위원”으로 한다.

안 제7조 중 “제7조”를 “제6조”로 하고, 제1항 중 “1년으로”를 “2년으로”로 하며, 안 제7조제2항 중 “임기로”를 “기간으로”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촉해야 한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하는 사람, 2.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회 활동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사람”을 신설한다.

안 제8조 중 “제8조”를 “제9조”로 하고, 제1항 중 “각 위원회의”를 “위원회의”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한다.”를 “위원회 소속 부서의 담당 공무원이 된다.”로 한다.

안 제9조를 삭제한다.

안 제11조제1항 중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를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로 한다.

안 제12조 중 “동”을 “이”로 한다.

안 제13조 중 제목 “운영세칙”을 “시행규칙”으로 하고,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는 “규칙으로 정한다.”로 한다.

별표 “교육장 소속 하에 두는 자문위원회의 명칭”을 신설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 조문 비교표

제 정 안	수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 116조의2에 따라 서울교육 주요 정책의 입안,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있어서 <u>각계 전문가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감의 자문에 응하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2조(설치)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하에 다음 각 호의 분야에 대한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교육복지 사업</li> <li>2. 사교육 경감</li> <li>3. 학교신설 및 이전 계획</li> <li>4. 학교 및 소속기관에 대한 시설 사업</li> <li>5. 주요 교육정책 및 발전 방향 수립</li> <li>6. 학습부진 대책</li> <li>7. 학생 인권 및 학교 부적응 등 생활지도</li> <li>8. 외국어 교육</li> <li>9. 문화 및 예술 교육</li> <li>10. 체육 및 수련 교육</li> <li>11. 친환경 무상급식</li> <li>12. 학부모 교육 및 지원</li> <li>13. 혁신학교 운영</li> <li>14. 수업·평가·연수 혁신</li> <li>15. 과학 교육</li> <li>16. 영재 교육</li> <li>17. 환경·생태 교육</li> <li>18. 직업·진로 교육</li> <li>19. 민주시민 교육</li> <li>20. 도서관 정책</li> <li>21.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처우 개선</li> <li>22.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정책</li> </ol> <p>② 교육장 소속 하에 제1항제5호에서 규정 <u>한 분야에 대한 위원회를 둘 수 있다.</u></p>	<p>제1조(목적) ----- ----- <u>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u> -----.</p> <p>제2조(설치) ① ----- -----&lt;삭제&gt;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교육복지정책자문위원회</li> <li>2. 사교육정책자문위원회</li> <li>3. 학교신설·이전자문위원회</li> <li>4. 교육시설정책자문위원회</li> <li>5.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li> <li>6. 학습부진대책자문위원회</li> <li>7. 학생생활지도정책자문위원회</li> <li>8. 외국어교육정책자문위원회</li> <li>9. 문화·예술교육자문위원회</li> <li>10. 체육·수련교육자문위원회</li> <li>11. 친환경무상급식자문위원회</li> <li>12. 학부모지원정책자문위원회</li> <li>13. 혁신학교정책자문위원회</li> <li>14. 수업·평가·연수혁신자문위원회</li> <li>15. 과학교육자문위원회</li> <li>16. 영재교육자문위원회</li> <li>17. 환경·생태교육자문위원회</li> <li>18. 진로·직업교육자문위원회</li> <li>19.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li> <li>20. 도서관정책자문위원회</li> <li>21. 학교비정규직정책자문위원회</li> <li>22. 사학정책자문위원회</li> </ol> <p>② -----&lt;삭제&gt; ----- ----- 이 경우 위원회의 명칭은 별표와 같다.</p>

③ 각 위원회의 명칭은 제1항 각 호의 분야  
별로 교육감이 정한다. <삭제>

제3조(기능) 위원회는 제2조에서 설치된  
분야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감의 자문에 응한다.

1. 해당 분야에 관한 기본 방향 및 계획 수립
2. 해당 분야에 관한 제도 개선
3. 해당 분야에 관한 사항 점검 및 평가
4. 기타 교육감이 특별히 요청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  
합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제2조제1항제5호에 의해 설치되는 위원회  
는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 또는 임명한  
다.

1. 학계 또는 교육계 종사자
2. 시민단체가 추천한 자
3. 학계 및 교육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자
4. 기타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5조(위원장) <신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교육감이 지명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에는 교육감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1. 교육감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2. 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조(기능) 제2조에서 설치된 위원회는 -----  
----- 교육감에게  
자문한다.

1. (원안과 같음)
2. (원안과 같음)
3. (원안과 같음)
4. (원안과 같음)

제4조(구성) ① --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  
-----.

② -----  
----- 교육감이 위촉한다.

1. 학계 또는 교육계 관계자
2. 교육 관련 단체 및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
3.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이 추천한 교육위원
4. (원안과 같음)

제5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며 위원 중에서 호선한  
다.

② -----,  
-----.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  
----- <삭제>  
-----.

제8조(회의) ① (원안과 같음).

② (원안과 같음)

1. ----- 요구가 있는 경우
2. 재적위원 -----

③ (원안과 같음)

④ 기타 회의운영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신설〉

제8조(간사) ① 각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서울특별시 교육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한다.

② 간사는 정책자문과 관련하여 누락되는 분야가 없도록 관련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제3조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주민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①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과 관련한 조사·연구 등의 경비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준용) 제2조제2항에 의한 위원회는 동 조례에서 정하는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교육장"으로 본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④ (원안과 같음)

제6조(위원의 임기) ① ----- 2년으로 -----, -----.

② -----  
----- 기간으로 -----.

제7조(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촉해야 한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하는 사람
2.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회 활동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사람

제9조 (간사) ① 위원회의 -----  
-----, ----- 위원회 소속 부서의 담당 공무원이 된다.

② (원안과 같음)

〈삭제〉

제11조(수당 등) ① -----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  
-----.

② (원안과 같음)

제12조(준용) ----- 이 -----  
-----.

제13조(시행규칙) -----  
----- 필요한 ----- 규칙으로 정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에 따라 서울교육 주요 정책의 입안,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있어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하에 다음 각 호의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교육복지정책자문위원회
2. 사교육정책자문위원회
3. 학교신설·이전자문위원회
4. 교육시설정책자문위원회
5.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6. 학습부진대책자문위원회
7. 학생생활지도정책자문위원회
8. 외국어교육정책자문위원회
9. 문화·예술교육자문위원회
10. 체육·수련교육자문위원회
11. 친환경무상급식자문위원회
12. 학부모지원정책자문위원회
13. 혁신학교정책자문위원회
14. 수업·평가·연수혁신자문위원회
15. 과학교육자문위원회
16. 영재교육자문위원회
17. 환경·생태교육자문위원회
18. 진로·직업교육자문위원회
19.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20. 도서관정책자문위원회
21. 학교비정규직정책자문위원회
22. 사학정책자문위원회

② 교육장 소속 하에 제1항제5호에서 규정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명

청은 별표와 같다.

제3조(기능) 제2조에서 설치된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감에게 자문한다.

1. 해당 분야에 관한 기본 방향 및 계획 수립
2. 해당 분야에 관한 제도 개선
3. 해당 분야에 관한 사항 점검 및 평가
4. 기타 교육감이 특별히 요청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제2조제1항제5호에 의해 설치되는 위원회는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1. 학계 또는 교육계 관계자
2. 교육 관련 단체 및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
3.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이 추천한 교육위원
4. 기타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5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며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촉해야 한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하는 사람
2.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회 활동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사람

제8조(회의) ①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1. 교육감이 요구가 있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기타 회의운영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원회 소속 부서

의 담당 공무원이 된다.

② 간사는 정책자문과 관련하여 누락되는 분야가 없도록 관련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록 작성 등) ①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자문사항을 서면으로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①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과 관련한 조사·연구 등의 경비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준용) 제2조제2항에 의한 위원회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교육장"으로 본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교육장 소속 하에 두는 자문위원회의 명칭**  
(제2조 제2항 관련)

번호	명칭	해당 지역교육청
1	서울동부교육발전자문위원회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
2	서울서부교육발전자문위원회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3	서울남부교육발전자문위원회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
4	서울북부교육발전자문위원회	서울특별시북부교육지원청
5	서울중부교육발전자문위원회	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
6	서울강동교육발전자문위원회	서울특별시강동교육지원청
7	서울강서교육발전자문위원회	서울특별시강서교육지원청
8	서울강남교육발전자문위원회	서울특별시강남교육지원청
9	서울동작교육발전자문위원회	서울특별시동작교육지원청
10	서울성동교육발전자문위원회	서울특별시성동교육지원청
11	서울성북교육발전자문위원회	서울특별시성북교육지원청